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(김기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56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0일

발 의 자 : 김기대, 김기덕, 김정환,
김태수, 김평남, 노승재,
박기열, 박상구, 박순규,
봉양순, 송명화, 유 용,
유정희, 이광성, 최웅식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지하철, 도로, 하수도 공사 등 공사구역내 원인자로 인해 발생 하는 지장 상수도관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닌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이설하고 있으며, 상수도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원인자가 이설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시공 중 잦은 누수, 수질사고 발생 및 자재방치, 세척 불량 등 공사품질 저하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.
이에 원인자 이설공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공사품질 향상 및 안정급수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.
- 그리고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 문 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 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자 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기 위한 시설물 이 설비용(설계비, 시공비, 감리비, 기타 부대비용 등) 항목 추가(안 제3 조제2항제10호 신설)
- 나.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“소요되는”을 각각 “드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단수된지역”을 “단수된 지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소요된”을 각각 “든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시설물 이설비용(설계비, 시공비, 감리비, 기타 부대비용 포함)

제4조제2항제4호 중 “따른다.다만”을 “따른다. 다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산정한다”를 “산정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계산한다.다만”을 “계산한다. 다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건물에 대하여 는”을 “건물은”으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아니 된다”를 “안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아니하였으나”를 “않았으나”로, “아니 된다”를 “안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단서 중 “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”를 “긴급한 공사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4항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한다.다만”을 “한다. 다만”으로 하고, 단서 중 “비용에 대하여는”을 “비용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한다.다만”을 “한다. 다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”를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아니할”을 “않는”으로, “불복이 있는”을 “불복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“아니 된다”를 “안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설치중”을 “설치 중”으로, “단서 조항”을 “단서”로, “등에 대하여”를 “등에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비용에 대하여”를 “비용은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제1호 중 “제반조치”를 “모든 조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8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원인자부담금“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<u>소요되는</u>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.</p> <p>가.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<u>소요되는</u>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(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)</p> <p>나.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·철거 등의 공사에 <u>소요되는</u>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</p> <p>다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드는</u> ----- -----.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 <u>드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 <u>드는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

2. (생략)

3. “급수차의 사용경비”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지역에 급수차가 출동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.

4. ~ 7. (생략)

제3조(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)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·정수장, 배수지 및 송·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

2.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

② 제2조제1호나목, 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, 이설,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 단수된 지역-----
-----.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) ① -----
-----.

1. -----

----- 든 -----

2. -----

----- 든 -----

② -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시설물 이설비용(설계비, 시공비,

제4조(부담금 산정기준) ① (생략)

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.

1. ~ 3. (생략)
4. 도로복구비는 「서울특별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에 따라 산출한 도로굴착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른다.다만,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접복구비는 도로굴착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5. ~ 7. (생략)
8.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
- 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.다만,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는 부담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.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전액을 감면

감리비, 기타 부대비용 포함

제4조(부담금 산정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

----- 따른다. 다만 -----

-----.
5. ~ 7. (현행과 같음)
8. -----

----- 산정한다.
- ③ -----
----- 계산한다. 다만 -----
-----.
- ④ -----
----- 건물은 -----
----- 범위 -----
-----.

해 줄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
제5조(손피자 등의 의무)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피한 자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(생략)

제7조(부담금의 징수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·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손피자 등의 의무) ① -----

안된다.

② -----
----- 않았으나 -----

----- 안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부담금의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긴급한 공사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시장은 손피자가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「수도법」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8조(부담금의 징수방법)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징수하여야 한다.다만, 규칙이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징수할 수 있으며 분할 징수 시 별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피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다만,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손피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손피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피자에게

④ -----
----- 않은 -----

-----.

제8조(부담금의 징수방법) -----

한다. 다만----- 비용은

-----.

제9조(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한다. 다만-----

-----.

③ -----
----- 고려하여 -----

징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제3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이의신청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0조,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를 준용한다.

제15조(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)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

-----.

제10조(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1항-----

-----.

제11조(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
-----.

③ ----- 제2항에 따른 ----- 않는 ----- 불복하는 -----
-----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-----
-----.

제15조(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) ① --

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다만, 배수지 등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·공작물과 공익 또는 시민 편익을 위한 체육시설 등(건축물 제외)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설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 또는 제1항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.

제17조(권한위임) ① (생략)

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.

1. 제6조에 따른 수도관리자의 의무

----- 안된다. -

② -----

----- 설치 중-----

----- 단서-----

----- 등

에게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비용은 -----

제17조(권한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-----

와 제반조치

2. (생략)

3. 제8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
징수

4. ~ 10. (생략)

-- 모든 조치

2. (현행과 같음)

3. 제8조에 따른 -----
--

4. ~ 10. (현행과 같음)